



# 건설교통부, 의무적 가입 보험료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반영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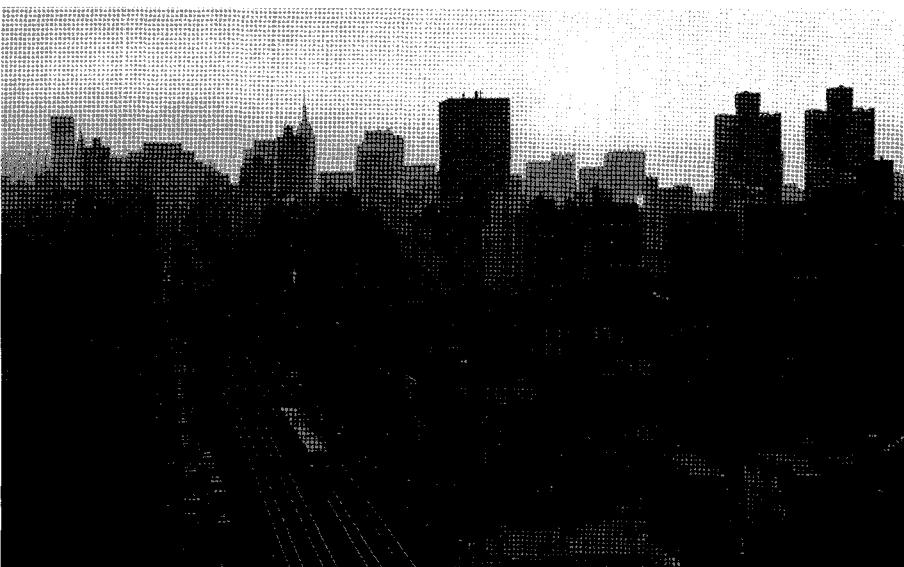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의, 반영

## 정부에서는

국민복지증진과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2003년 7월 1일부로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을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근로자 및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도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법률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에서는 2003년 12월 26일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고, 조달청에서는 2004년 3월 6일에 기 발주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건설공사원가 제비율에 동 보험료를 반영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 발주공사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보험료를 확보하지 못한 많은 설비건설업체들이 대한설비건설협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 발주공사 보험료에 대해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



통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줄 것과 또한 산하기관에 우선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시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에서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지난 7월 27일 소속 기관(산하기관 포함)에 기 발주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에서 반영되지 않은 의무적 가입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회계예규(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및 조달청의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건설경제 담당관실-3109)하여 줄 것을 시달하였다.(13쪽 건설교통부 공문 참조)

### ■ 조달청 유권해석 질의 및 회신

#### [질의내용]

200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이 강화되어 건설현장에 1개월 이상 채용되는 모든 일용근로자들은 관계 보험법에 의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가입치 않을 시는 관련 공단에 의거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하도급 업체인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강제로 징수한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 및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관련법(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제3항 10호 보험료)에 의거 국민 4대 보험의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나, 그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지금까지 공사원가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기 발주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사계약서의 산출내역서상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누락된 것이므로 마땅히 신규 비록으로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회계예규 “공사원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라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법무 41301-55633호<2003년 9월 18일>)

"우리 국토 아름답게 - 우리 교통 편리하게"

## 건설교통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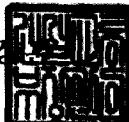
제목 의무적가입 보험료(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반영 조치

1. 보건복지부는 국민복지증진과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2003.7.1부터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월8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 및 1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도 의무가입을 확대·시행하였고, 또한 재정경제부도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반영하도록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를 2003.12.26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시공업체가 기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의무적가입보험료(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를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불임과 같이 대한설비건설협회로부터 건의요청이 있는 바, 귀 기관에서는 시공업체가 의무적 가입보험료(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회계예규 및 조달청의 유권해석(불임 참조) 등을 토대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설비건설협회 공문사본(조달청 질의회신 포함) 1부. 끝.

## 건설교통부장관



수신자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교통부 인천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서울지방항공청장,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전결 07/23

행정주사

봉기웅

행정사무관

정경호

담당관

도재호

협조자

시행 건설경제담당관실-3071 (2004.07.23.)

접수

( )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http://www.moct.go.kr

전화 2110-8201-

전송 02-503-6439 / nky12@moct.go.kr

/ 공개

\* 지난 7월 23일 건설교통부에서, 기 발주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에서 반영되지 않은 의무적 가입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되도록 건설교통부 소속기관(산하기관 포함)에 통사망이 조치토록 시달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포스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통신 △한국중부발전(주) △한국가스기술공급(주) 등 산업자원부 소속 산하기관에 「의무적 가입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 조치」에 대한 공문(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3109)을 안내,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